제주지방항공청 공고 제2019 - 05호

제주지방항공청 기록연구사 채용 공고

제주지방항공청에서 기록연구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성실하고 우수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19년 6월 14일

제주지방항공청장

1 선발예정인원

선발 직무분야	임용예정 직급	선발예정인원	근무예정부서 (근무지)
기록물관리	기록연구사	1명	제주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 (제주시 공항로 소재)

2 주요 업무 분야

○ 제주지방항공청 기록물관리 업무

- 기록물관리 정책 개발 및 실무운용
- 기록물관리 관련 시스템 관리
- 기록물(시청각, 행정박물 등 포함)의 수집, 정리, 폐기, 보존 및 활용 등 관리
-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및 기록물 평가
- 기록정보서비스, 행정정보 공개 및 일반보안(비밀기록물 관리 포함) 등 그 밖의 기록물 관련 사항 등

3 응시자격(면접시험(2019. 7. 5. 예정)일 기준)

○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(정년)에 해당하지 않으며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○ **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**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)
 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○ **「국가공무원법」 제74조(정년)**

-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-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○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
※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

○ 20세 이상(1999. 12. 31. 이전 출생자)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

○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(2019. 7. 5. 예정)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

○ ‘기록물관리 전문요원’ 자격증 소지자

※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(‘19.7.5 예정) 기준으로 판단함

○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

우대요건	○ 관련직무 분야 근무경력(근무기간별 차등배점) ○ 관련직무 분야 연구논문 실적(학위논문제외, 건별 배점) - SCI급,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 학술지 게재 논문에 한함 ○ 관련직무 분야 수상 실적 - 원서접수마감일기준 10년 이내 중앙행정기관,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(상훈)에 한정(단체 제외) * 표창(상훈) 범위 : 훈·포장, 대통령·국무총리표창, 중앙행정기관장표창, 공공기관장표창 * 공공기관 범위 :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(alio.go.kr)에서 지정된 공공기관
가산요건	○ 한국사능력검정시험(국사편찬위원회 주관 ‘15. 1. 1.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) 3급 이상 서류전형 만점의 4%의 점수가산(1·2·3급간 가산점수 차등은 없음)

※ (경력의 범위) ‘경력’은 기록물관리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하며, 경력(재직)증명서 제출건에 한함(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(상근. 비상근, 주당근무시간), 부서, 직위(직급),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) *** 시험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에 한함**

- 담당업무는 관련직무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
-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, 서명(또는 도장)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
-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(담당업무 미기재) 등으로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
-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관련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

  *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(주40시간 기준)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(예 :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: 4년×(20시간/40시간) = 2년 인정)
-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,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
- 폐업회사의 경우 ‘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*(홈택스 발급 가능)’와 ‘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** 중 1종’ 제출 필수

  * 사실증명서 발급방법 붙임1(다음페이지) 참고

  **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

※ (기타)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은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,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, 원서접수 마감일(‘19. 6. 24.)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

[붙임1 :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(hometax)]

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:

- 민원증명 → 민원증명-사실증명신청(1번 동그라미) → 사실증명(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)

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:

- 민원증명 → 민원증명신청-소득금액증명(2번 동그라미) → 근로자소득용 발급(발급기한 설정) ⇒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
-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

4 근거 법령

○ 국가공무원법, 공무원임용령, 공무원임용시험령,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, 공무원 임용규칙,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(인사혁신처 예규),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

5 시험방법

가. 서류전형

○ 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
- 단, 응시인원이 11명 이상일 때는 서류전형 기준(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우대요건)에 따라 10명을 합격자로 결정(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)

나. 면접시험

○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
- (평정요소)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

○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

- (불합격기준)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"하"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"하"로 평정하였을 때

- (평정 성적 우수한 자)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 중 '상'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하며, '상'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'중'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

6 시험일정

구 분	일 정	내 용
시험 계획 공고	'19.6.14.(금) ~ 6.24.(월)	제주지방항공청 홈페이지(http://jroa.molit.go.kr), 인사혁신처 나라일터, 한국정책방송(KTV)
응시원서 접수	'19.6.20.(목) ~ 6.24.(월)	제주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 ※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'19.6.28.(금)	제주지방항공청 홈페이지(http://jroa.molit.go.kr)
면접시험	'19.7.5.(금)	제주지방항공청 중회의실
최종 합격자 발표	'19.8.2.(금)	제주지방항공청 홈페이지(http://jroa.molit.go.kr), 개별통보

○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

○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으로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

○ 접수기간 : 2019. 6. 20.(목) ~ 6. 24.(월) 18:00

○ 접수방법 :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

【접수처】

• (우 63115)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
제주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,
(전화) 064-797-1721, (팩스) 064-797-1739

-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:00~18:00(12:00~13:00 제외) 내에만 접수가능(대리접수 가능)하며, 토・일요일,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
- 우편접수는 등기우편 접수(봉투 겉표지에 "2019년 제주지방항공청 기록연구사 채용 응시원서 재중" 기재, 봉투표지 양식 활용)에 한하고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함

※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는 받지 않음

※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,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

※ 접수번호(응시번호)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예정

※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, 전자수입인지(www.e-revenuestamp.or.kr) 등을 통해 발급

○ 제출서류

구 분	내 용
1.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 (별지 제1호 서식)	ㅇ 2~13까지의 서류 제출여부를 확인·기재하여 제출
2. 응시원서 1부 (별지 제2호 서식)	ㅇ 응시수수료 : 7,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(우체국구입)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방문하여 수입인지 구매(행정수수료용) ※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ㅇ 전자우편(이메일주소)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
3. 이력서 1부 (별지 제3호 서식)	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하되,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됨을 유의
4. 자기소개서 1부 (별지 제4호 서식)	ㅇ A4 2매 내외로 작성
5. 직무수행계획서 1부 (별지 제5호 서식)	ㅇ A4 3매 내외로 작성
6. 연구 실적 관련 1부 (별지 제6호 서식)	ㅇ 논문실적 작성(**해당자에 한함**)
7.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(별지 제7호 서식)	ㅇ 자필 서명하여 제출
8. 개인정보제공·이용 동의서 1부 (별지 제8호 서식)	ㅇ 자필 서명하여 제출
9. 주민등록초본 1부	ㅇ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하며, 남자의 경우 **'병역사항 포함'**으로 발급
10. 학력(위)증명서 1부	ㅇ 공고일 이후 발행된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
11. 경력(재직)증명서 각1부	ㅇ 근무경력 사항에 해당하는 경력(재직)증명서 각1부(**해당자에 한함**)
12. 논문발표실적 사본 1부	ㅇ 논문표지, 논문제목,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첨부(**해당자에 한함**)
13. 자격증 사본 각1부	ㅇ '기록물관리 전문요원' 자격증 사본 1부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(**해당자에 한함**)

※ 제출서류는 번호 순서대로 정리하여,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(스테이플러 사용 및 제본 금지)

※ 응시원서 등 관련 서류 서명란에 자필서명 필수

8 임용예정일

○ 임용예정일 : 2019. 8월 중 예정이나,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

9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

○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○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5조의2 및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(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, 학위,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)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,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
○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○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,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○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,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○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○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.

○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,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○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(예: 졸업증명서)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.

(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)

○ 이력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
○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
◁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▷

인사혁신처 홈페이지(www.mpm.go.kr) - 참여민원 – 신고센터 - 인사신문고 – **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**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(☎ 064-797-1721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참고>

직무기술서 〔연구직(기록연구사)〕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	운영지원과(제주 소재)

주요업무	○ 기록물관리 정책 개발 및 실무운용 ○ 기록물관리 관련 시스템 관리 ○ 기록물(시청각, 행정박물 등 포함)의 수집, 정리, 폐기, 보존 및 활용 ○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및 기록물 평가 ○ 기록정보서비스, 행정정보 공개 및 일반보안(비밀기록물 관리 포함) 등 그 밖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등

필요역량	○ **(공 통 역 량)** 공직윤리, 공직의식, 고객지향마인드 ○ **(직급별 역량)** 긍정성, 문제해결력, 관계구축력, 의사소통능력

필요지식	○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정책 등의 이해 ○ 국가 주요 기록물 선별을 위한 평가방법, 업무분석 등 전문지식 ○ 이관.수집, 등록.분류, 보존, 활용 등 기록물 관리 업무의 이해 ○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한 경력 또는 전문지식

응시자격요건	**관련분야 : 기록물관리 업무**	
	자격증	○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
우대요건		○ 관련분야 연구실적(논문실적) 및 근무경력 보유자 ○ 관련 분야 수상자
가산요건		○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